

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」 폐지 보고

의안 번호	제2022-120호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1.

제출자: 강서구청장

1. 상정이유

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」 폐지 안건 의결에 따라 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」 규약 제16조제2항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175조 의거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주요 보고내용

가. 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」 를 폐지한다.

나. 근 거

- 1) 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」 규약 제16조(결의사항의 처리)
- 2)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(행정협의회 구성) 및 제175조(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)

다. 폐지사유

- 1) 2014년 이후 관련 회의가 미개최 되었으며, 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」 설립 목적인 수질이 개선되었음.
- 2) 기타 협력사업인 하천 준설 등의 사업은 자치단체별로 계속 추진 중이므로 2022년 9월 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」 폐지를 안건으로 상정
- 3) 의견수렴 결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폐지 의결됨.

3. 추진경과

- 가. 1999. 4. 29.: 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」 창립총회 개최
- 나. 2001. 9. 11.: 자치단체장 간담회 개최
- 다. 2011. 3. 28.: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약개정 결의
- 라. 2022. 9. 6.: 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」 폐지 안전
의견조회(구로구청)
- 마. 2022. 10. 7.: 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」 폐지 안전 의결

4. 참고사항

가. 「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」 개요

- 1) 창립일: 1999. 4. 29.
- 2) 창립목적: 안양천 유역의 자치단체들과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
환경보전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정협의회를 구성함
- 3) 참여기관: 안양천 유역 13개 지자체
 - 서울시 (7개구): 구로구, 영등포구, 양천구, 금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동작구
 - 경기도 (6개시): 안양시, 광명시, 군포시, 의왕시, 시흥시, 부천시

나.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 및 제175조

다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라. 부담금: 없음

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

제 정 1999. 4. 29

일부개정 2001.10. 9

일부개정 2011. 3. 28

폐 지 2022. 10.

제1조(목적) 안양천 유역에 자리잡은 서울 남서 지역과 경기도의 자치 단체들이 환경오염 대응체제 및 환경보전을 위한 안양천수질개선 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환경 보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) 이 협의체의 명칭은 “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3조(사무소의 위치) 협의회의 사무소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에 둔다.

제4조(구성) 협의회의 구성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·강서구청장·구로구청장·금천구청장·영등포구청장·동작구청장·관악구청장과 경기도 안양시장·부천시장·광명시장·군포시장·시흥시장·의왕시장을 위원으로 한다.

제5조(조직)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으로 서울특별시 1인, 경기도 1인과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③ 간사는 회장 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.

제6조(회장의 선출) 회장은 정기회의시 선출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
제7조(회장의 임기) 회장의 임기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임기 4년을 고려하여 전반기·후반기를 구분하여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업무의 인수인계) 회장이 변경될시 전임회장은 후임회장에게 협의회와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회장은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.

제9조(회의운영 등)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하고, 정기회의는 1년마다 개최하며, 수시회의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정기회의는 회장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하고, 수시회의는 개최 요구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최토록 한다.

③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인 협의회 운영을 통하여 안양천 수질개선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종합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은 협의안을 회의 개최 15일전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, 회장은 안건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무협의회에 안건을 회부한다.

⑤ 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의 관계공무원이 협의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. 또한, 시민환경단체의 자문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안양천살리기 네트워크 공동운영 위원장을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기능) 협의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관련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.

1.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.

2. 수질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.
3.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.
4.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추진에 관한 사항.
5.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제11조(의결) 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
② 위원이 부득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그가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이 회의에 대신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의결권을 가진다.

제12조(회의록 작성) 협의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(자료제출요구)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, 기타 필요시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4조(실무협의회 구성과 운영) ① 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운영한다.

② 실무협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관련 실무 과장으로 구성하고, 상정된 안건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배석,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③ 실무협의회 회장 및 간사는 회장소속 자치단체의 관련 실무과장으로 한다.

제15조(경비부담) 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일상경비는 협의회를 개최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.

② 공동사무의 처리, 공동개발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그때마다 협의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의하여 부담한다.

제16조(결의사항의 처리) ① 협의회에서 합의,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성실히 준수하고 신속히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합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

제17조(조정요구) ①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서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관계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지방자치법 제15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조정요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관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장이 조정요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계 위원회가 직접 조정요청을 할 수 있다.

제18조(규약개정)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으로 한다.

제19조(보칙)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.